

## 2026년도 제2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6년도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심 한 식

### 1. 신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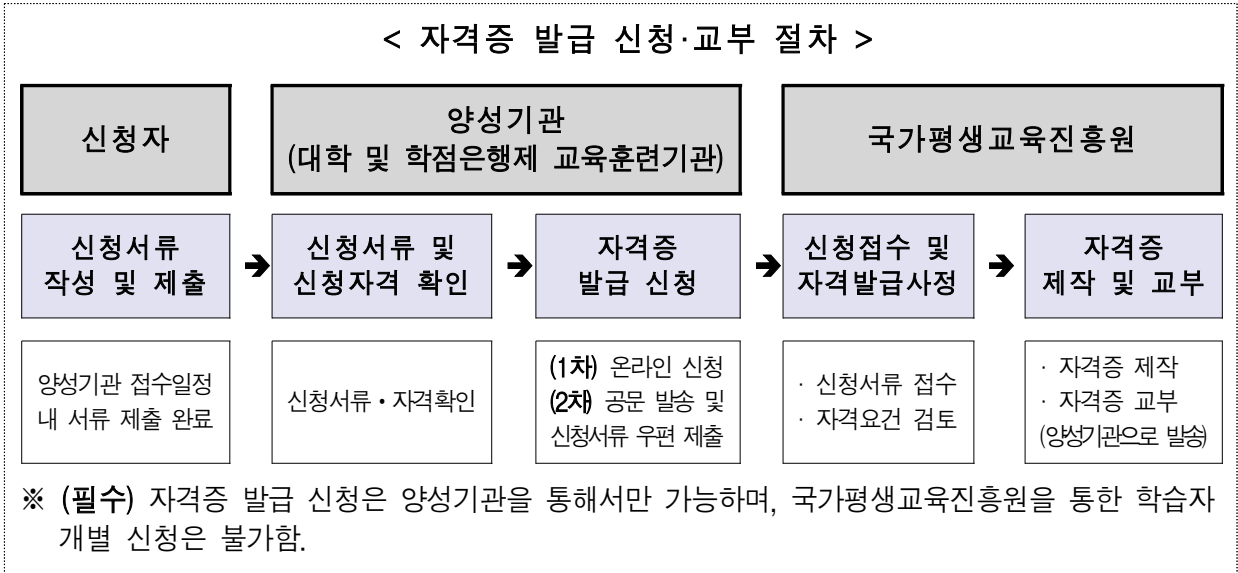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2. 자격증 신청 및 교부 절차

- 양성기관은 신청자 서류 접수 후 매뉴얼을 참고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평생교육사자격실)에 자격발급 신청



## 3. 신청일정

- (신청 기간) **2026. 5. 8.(금) ~ 5. 18.(월) 자정까지**

- 개인 신청자는 **양성기관으로**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제출

구분	접수 기간		자격증 교부
	신청자 → 양성기관	양성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제2차	양성기관 자체공지	5.8.(금) ~ 5.18.(월)	6.12.(금)

- 양성기관의 접수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양성기관별 자체 공지를 통해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서류 접수
- 양성기관은 각 차시별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발급 신청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불가
-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제1차·제3차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
-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제1차 접수 기간, 2026년 8월 졸업예정자는 제3차 접수 기간에 신청 가능

## 4. 신청방법

- 양성기관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lledu.nile.or.kr)에 **온라인 자격 발급 신청** 완료 후 **전자공문 발송** 및 **신청서류 우편 제출**
  - **(1차 온라인 신청)**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 양성기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신청자별 신청정보 입력(마감일 **5.18.(월) 자정까지** 가능)
  - **(2차 서류제출)**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 **전자공문** 발송 후 신청서류를 하단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청사 주소로 접수 기한 내 **우편 제출**
    - ※ 우편 접수는 신청 **마감일(5.18.(월))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처리

(078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05-7(K스퀘어 마곡 타워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층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담당자' 앞

## 5. 유의사항

- 자격발급 신청 시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폐기 처리함.
  - ※ 단,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원본으로 제출한 외국 학위 취득사실 확인 관련 서류에 한하여 별도 신청 시 반환 가능(신청자 비용 부담)
  - ※ 외국대학 학위취득 및 학력 인정 확인 관련 서류, 번역공증서류는 **사본 제출** 가능함.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 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자격발급 발급신청 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5월 29일(금)까지** 처리 미완료 시 **자격증 교부 불가함.**
  -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목은 **2008년 2월 18일 이후** 운영된 과목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관련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요건 충족 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양성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함.

## 6. 관련 문의: 평생교육사 안내전화(☎ 1577-3867, 평일 13~17시 운영)